

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 위원(옴부즈만) 모집 공고

우리 시에서는 「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여성 위원(옴부즈만)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19년 5월 27일

파 주 시 장

1. 위촉분야 및 인원

구 분	위촉분야	위촉인원	성별	위촉기간	비 고
공개모집	위원(옴부즈만)	1명	여성	4년(단임)	

※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 및 「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양성 평등 균형을 위하여 여성만 지원 가능

2. 주요업무

- 가.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·처리
- 나. 시장 및 파주시 의회가 다수인 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- 다.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- 라.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마.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
- 바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

3. 지원자격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결격사유) 및 같은 조례 제10조(검직금지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

나.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)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)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)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제2조 적용

※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2 제4호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8조의4 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제외

※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

다. 성별 : 여성

라. 지역·연령 : 제한없음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파주시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결격사유) 해당사유 〉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정당의 당원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

〈 파주시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겸직금지) 해당사유 〉

1.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
2.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·직원.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.

4. 위촉 신분 및 보수

- 가. 위촉신분 : 위촉직(비공무원)으로서 주 20시간 옴부즈만 활동 수행
- 나. 활동비 : 임기제공무원 5급(상당) 연봉 하한액의 1/2 (월 246만원 ^{2019년 기준})

5. 전형방법

- 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
 - ※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
- 나.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 - ※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, 옴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,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다. 의회 동의 대상자 확정 :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
- 라. 의회 동의 :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파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됨
- 마. 최종 발표 :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(2019. 8월 예정)
 - ※ 최종 발표는 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지원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19. 6. 10.(월) ~ 6. 14.(금) 09:00 ~ 18:00
(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)
- 나. 접수장소 : 파주시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(파주시청 별관 2층)
-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, 우편·팩스·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
- 라. 제출서류
 - 1) 지원서 1부
 - 2) 자기소개서 1부
 - 3) 직무수행계획서 1부
 - 4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 - 5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 - 6)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하며, 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필서류는 필히 제출)
 - ※ 지원서 등은 파주시 홈페이지(www.paju.go.kr)에서 내려받아 사용

7. 유의사항

- 가.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
- 나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
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- 다.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
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- 라.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
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.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류전형일 7일전까지 파주시청
홈페이지에 공고함
- 바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
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름
- 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감사관 옴부즈만팀(031-940-5971)으로 문의